

# 2022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모집 사업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 벤처기업협회

## 오늘 일정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30 ~ 14:00	사업설명회 참가자 등록	-
14:00 ~ 14:30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사업설명회	벤처기업협회
14:30 ~ 15:00	소셜벤처 FAQ 및 Q&A	
15:00 ~ 16:30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	에스큐브랩 김성신 대표

**유니콘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님**

『202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창업보육 전문매니저가 안내 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창업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22. 02. 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 (연령) 제한없음, (중복지원 불가) 일반 또는 특화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특허 취득비 등  
 (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 창업교육(40시간)

- 총 40시간의 창업교육 제공
- BM수립, 마케팅, 투자유치  
 기본교육(20H) 및 자율교육(20H)

#### 멘토링(경영자문 서비스)

- 전담멘토와 1:1 매칭하여  
 사업전반 경영자문 멘토링
- 기술·시장 분야별 멘토링

# 사업 개요

**협약기간**  
**선정 후 8개월 내외 ( `22. 6월 ~ `23. 1월 예정)**

## 지원규모

	<b>모집 중</b>		<b>특화분야 500명 내외</b>			
<b>특화분야</b>	소셜벤처	여성벤처	그린경제(총 100명 지원 예정)			
<b>주관기관</b>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b>지원규모</b>	100(명)	100(명)	16(명)	20(명)	12(명)	
<b>특화분야</b>	바이오	핀테크	DNA			무인이동체
<b>주관기관</b>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도로공사
<b>지원규모</b>	16(명)	18(명)	18(명)	18(명)	18(명)	10(명)

※ 일반 및 특화분야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추가배정 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사업 운영일정(안)

○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자금한도를 최종 결정 ※ 평가결과에 따라 창업자별 사업화 자금 차등지급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요건

## 하나. 공고일(`22.2.24.)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 완료한 자가 공고일 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분야로 창업(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 부여
- 사업 공고 전일까지(`22.2.23.)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둘. 나이제한 없음(특화 분야의 경우, 청년, 중장년 구분없이 선정 예정)

## 셋.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신청 자격 및 요건

## 의무사항

-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협약 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함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예정)
-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단, 협약기간 이내) 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소셜벤처판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예정)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인정)'를 최종점검 시 제출하여야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교육은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이수완료(이수증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 의무사항

-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와의 멘토링(협약기간내 12회)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2개월 마다 창업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현황 직원 근무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 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 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②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④

동 사업신청은 창업을 하려는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면 K-Startup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후추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시 유의사항

⑤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 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⑥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신청 완료를 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참여가 가능

⑦

동 사업 신청 시 「**공고 내 사업계획서 양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⑧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및 거래 불가 시 선정 취소)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불가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조」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수해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 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자 지원 불가

-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에 명시된 사업자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자 지원 불가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 ⑦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예정)인 자(기업)
- ⑧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증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였거나, 공동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하나.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지원

※(사업화 자금) 기업별 평균 50백만원 이며,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협약기간) 8개월 내외, 22. 06. ~ 23. 01.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 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제외)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국외)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 사업화자금 지출 시, 양산자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창업활동비(4백만원)는 월 50만원 한도로 협약 종료 시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창업교육

## 둘. 선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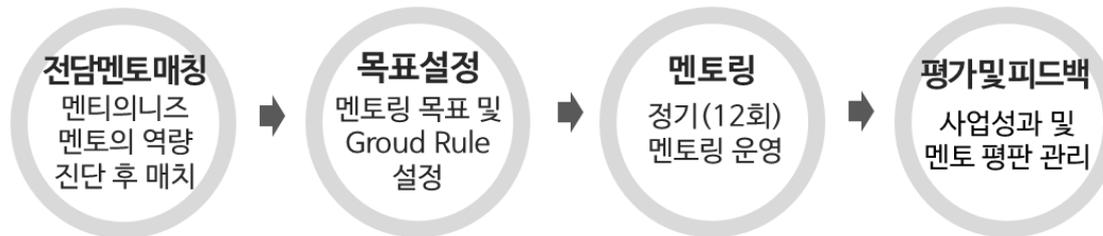
구분	교육시간	교육시기	운영주체	교육내용
기본교육	20시간	-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기업가 정신 등 주제별 강의</li> <li>※온라인을 통한 필수 교육 및 자율 선택 수강</li> </ul>
자율교육	10시간	6월 ~ 7월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벤처와 임팩트의 이해</li> <li>·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점검</li> <li>· 창업자 네트워킹</li> </ul>
	10시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의 이해 및 리포트 작성</li> <li>· 창업자 네트워킹</li> </ul>

## 지원내용

## 전담 멘토링

셋.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전담 멘토링 프로세스



## 멘토링 프로세스 관리

## ◆ 체계적인 매칭 및 사전교육 통해 멘토링 운영

- (매칭) 멘티의 자가진단 & 매니저 면담을 통한 멘토링 니즈 도출, 적합한 멘토 후보군 대상 역량 확인 후 매칭
- (멘토링 교육) 자체 개발한 **멘토링 가이드북**과 멘토와 멘티 사전교육으로 멘토링 만족도 제고

## ◆ 전담 매니저 통한 멘토링 프로세스 관리

- (모니터링) 전 과정 전담매니저의 참여, 원활한 진행 유도  
멘토, 멘티의 초기 라포형성 지원 주력
- (피드백) 멘티의 만족 여부, 멘토의 애로사항 등 진행과정 단계별 상호 상태 확인하여 **미스 매칭, 품질관리** 등

## 전담 멘토 관리

## ◆ 전담멘토 대상 정기교육 실시

- 멘토역량강화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멘토의 기본소양과 세미나 등을 통한 소셜벤처 창업기업의 역량 향상 지원
- 사업비 승인 시스템 활용방법 등 기본교육 실시

## ◆ 미 선정 예비창업자 멘토링 지원

- 탈락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ONE-STOP 멘토링 지원
- 신청자 당 2회 지원 + 필요 시 1회 추가지원(1회 1시간)
- 협회 내부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o (기간) 2022. 02. 24. (목) ~ 2022. 03. 17. (목) 16:00

※신청 마감일 2~3일 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마감 이후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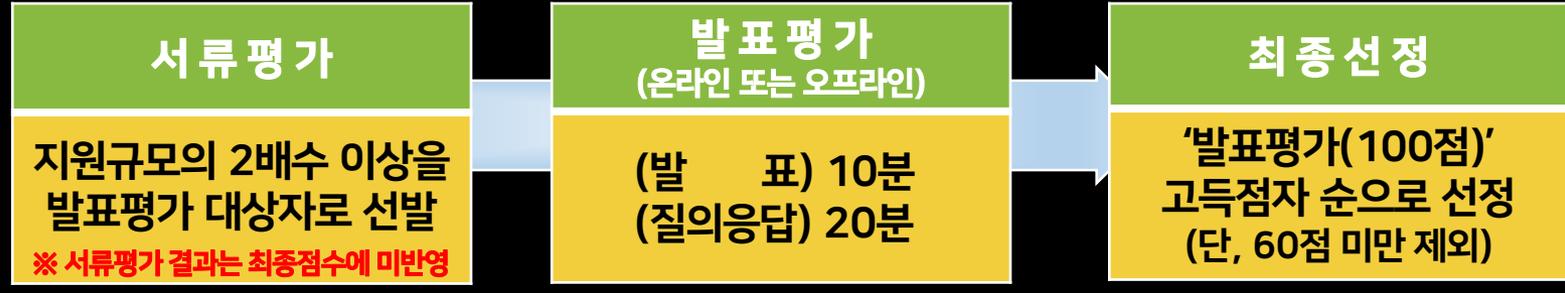
\*K-Startup 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 → 사업신청 내역조회 에서 확인

##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로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목적, 개발방안, 사업화 전략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 착안배경, 핵심기술 이해도 등에 대한 심층평가 진행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에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평가일정(안)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및 선정

## 기준 및 항목

- 평가 항목 별 점수가 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평가 점수와 관계 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항목별 과락 적용)

## &lt;선정평가 평가지표&gt;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문제인식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35점
실현가능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 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35점
성장전략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15점
팀 구성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15점

※평가는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 착안배경, 핵심기술 이해도 등에 대한 심층평가 진행

## 평가 및 선정

## 가점 내용

## &lt;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gt;

세부 가점 항목(최대 5점)	점수
<p>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p> <p>*단, 동 사업신청자가 권리자인 경우에 한하며 출원 건은 제외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p>	1점
<p>2) 최근 2년 이내(`20~현재)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p> <p>*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조 요망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 1점이며, 단 장관급 이상의 훈격은 1점 추가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및 수상 증빙 제출 시에만 인정</p>	2점(최대)
<p>3)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p> <p>①전북 군산시 ②울산 동구 ③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경남 고성군 ⑤경남 거제시 ⑥경남 통영시 ⑦전남 영암군 ⑧전남 목포시 ⑨전남 해남군</p>	1점
<p>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 기준 참조</p>	1점

##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평가 중

- ①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②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 제외
- ③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 할 수 있음

## 선정 후

- ①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②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③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④ 동 사업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됨

## 핵심목표 및 추진개요

## 핵심목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창업자 100명 육성**

## 추진방향 및 전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소셜벤처 역량강화**

협회(지회) / 지원기관 등과  
함께 **소셜벤처 네트워크** 확대

소셜벤처의 지속성장을 위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

## 추진과제

## 통합형 엑셀러레이팅 과정 운영



창업 교육



창업사업화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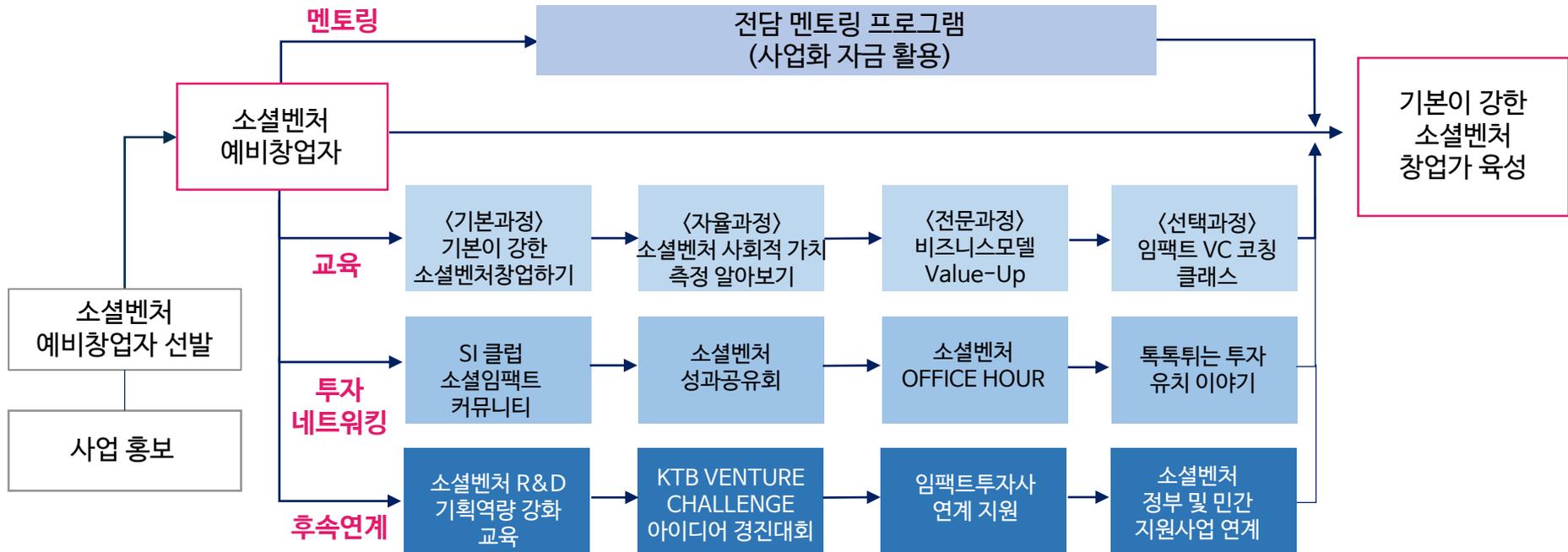


커뮤니티 구축



전담 멘토링

# 소셜벤처 'ALL IN ONE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과정을 통해  
**'기본이 강한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실행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가정신, 임팩트측정,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 창업 초기에 필요한 다양한 창업교육 실시

### 기본이 강한 소셜벤처 창업하기 (자율과정)

대상 : 소셜벤처 선정자 100명

일정 : '22. 06 ~ 07, 2회, 오프라인, 10H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기업가정신

- 선배 창업자 기업가정신 특장
-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 교육

#### ◆ 창업기업 A TO Z

- 예비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회계·특허
- 창업기업 BM 및 고객 발굴 교육
- 임팩트 투자 이해와 조달 전략

#### ◆ 창업가 마인드 셋

- 예비창업패키지 목표 설정 및 로드맵 작성



###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 측정 알아보기 (자율과정)

대상 : 소셜벤처 선정자 100명

일정 : '22. 11, 1회, 오프라인, 10H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임팩트 이해하기

- IMP 기반의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이해
- IMP 기반의 실제 사례 분석

#### ◆ 임팩트 설계하기

- 임팩트 측정을 위한 데이터 모집 설계
- 임팩트 비교 분석 방법 등

#### ◆ 임팩트 측정하기

- IMP 컨셉 보고서 작성
- IMP 보고서 발표 및 의견 교환 등



### 소셜 벤처 Office Hour (멘토링 상담소)

대상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10명

일정 : 주 2회(화/목), 오프라인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회계/세무, 법률, 마케팅, 지재산, 자금조달 투자 등 창업자 이슈사항을 반영한 전문가 1:1 멘토링



## 창업지원 프로그램

#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소셜벤처 커뮤니티 구축, 정부사업계획서 및 R&D 기획역량 강화, 소셜벤처 MBA 과정

01

## 임팩트 VC Coaching Class

추진배경

사업계획 검토 및 멘토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IR 및 피칭 역량 향상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주요내용

- 대상 : 임팩트 투자 및 투자유치가 필요한 창업자
- 일시 : 연 2회 (9월/11월) 운영
- 기대효과 : 임팩트 VC와 함께 사업계획 및 멘토링을 통하여 투자유치 역량 향상

추진배경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사간 정기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이해와 네트워크 구축

주요내용

- 대상 : 커뮤니티 참여 희망 창업자와 임팩트투자사, VC
- 일시 : 5회 운영 (온/오프라인 진행)
- 기대효과 : 참여자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대관계 형성 및 협력 도모를 통한 투자, 협업 기회 창출

02

## SI (Social+ Impact) Club

03

##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

추진배경

소셜벤처 창업자들의 지속적 사업 영위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KEY POINT 및 노하우 공유

주요내용

- 대상 :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 필요한 창업자
- 일시 : '23년 1월, 2회 운영
- 기대효과 :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발표 SKILL 습득으로 합격 가능성 제고

04

## 소셜벤처 MBA

추진배경

소셜벤처 창업자의 사업가 역량강화

주요내용

- 대상 : 창업자 25명
- 일시 : '22년 10월, 연 1회 운영
- 기대효과 : 창업자의 경영 DNA를 함양하여 지속성장과 Scale-Up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 데모데이,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교육, 선배벤처와의 교류회, 성과공유회

01

## 톡톡 튀는 임팩트 투자유치이야기

추진배경

사업초기 코칭 클래스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검증, 홍보 등 데모데이 진행

주요내용

- 대상 : 임팩트 VC 코칭 클래스 참여자
- 일시 : '22년 12월
- 기대효과 :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초기자금 확보 지원

02

## 유니콘 네트워킹 포럼

추진배경

소셜벤처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소 등 정보전달

주요내용

- 대상 : : 교류와 인사이트가 필요한 창업가
- 일시 : '22년 11월
- 기대효과 : 유니콘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도모

03

## 벤처 CEO 포럼

추진배경

선배벤처 및 스타트업 CEO와 정기적인 교류기회 제공, 기술 및 산업 트렌드, 경영, 인문 등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제공

주요내용

- 대상 : 교류와 인사이트가 필요한 창업가
- 일시 : 연 6회 운영
- 기대효과 : 선배기업인 및 창업기업 CEO정기 교류를 통한 지식 및 인사이트 제공

04

## 소셜벤처 성과공유회

추진배경

소셜벤처 성공사례 확인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성장전략, 우수 창업자 포상 등

주요내용

- 대상 : 소셜 창업자 및 생태계 관계자(연합프로그램)
- 일시 : '23년 3월
- 기대효과 : 소셜벤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생태계 성장 발전방안 도모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화를 위해 **벤처기업협회**가  
함께 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2022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모집설명회

FAQ

# 소셜벤처 관련

## Q. 소셜벤처란 무엇인가요?

- ✓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임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0항, ‘21.7. 법제화’)
  - \*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구별됨.



### 사회적기업

법적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추구가치 사회성 > 경제성



### 소셜벤처

법적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추구가치 사회성과 경제성 동시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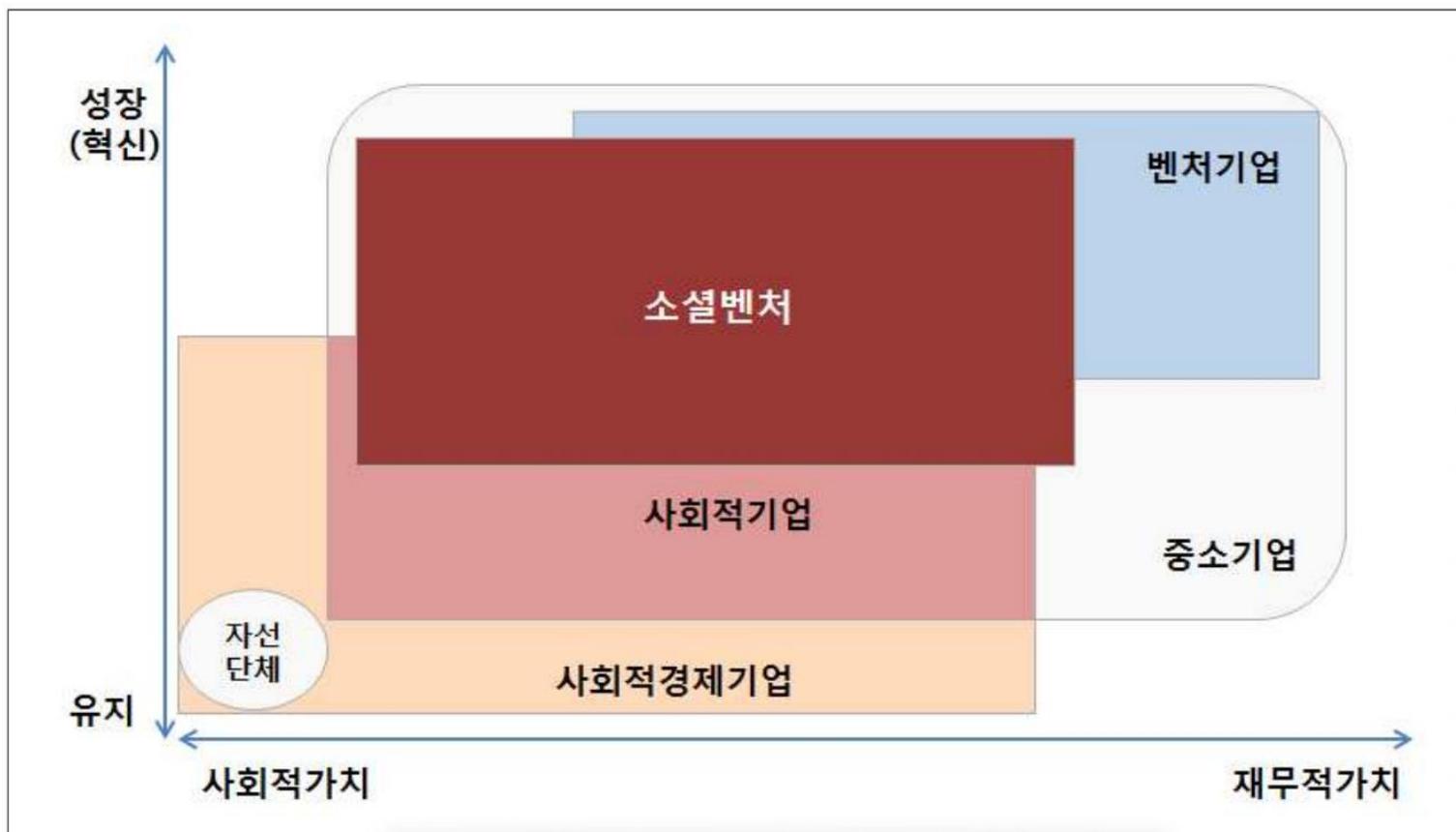


### 벤처기업

법적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추구가치 사회성 < 경제성

출처 : 기술보증기금

## <소셜벤처의 범위>



## <소셜벤처의 특징>



1.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위해 설립
2.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 예상
3. 사회적 목적을 지속하게 할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업가에 의해 주도

## Q. 소셜벤처의 핵심요소는 무엇인가요?

소셜벤처의 4가지 핵심요소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 ① **Social Problem** :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를 파악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
- ② **Social Mission** : 인식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셜미션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명의식
- ③ **Innovative Solutions**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 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이 필요
- ④ **Sustainable BM** :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경쟁우위요소를 보유

출처 : Brock(2013)

## Q.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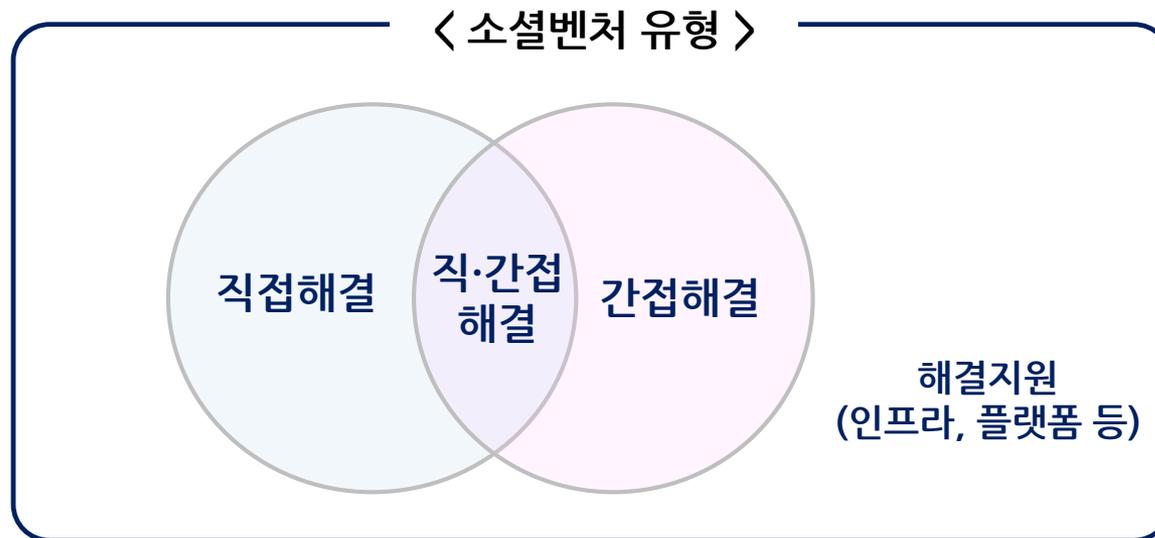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인간의 삶의 개선’과 ‘환경의 개선’으로 구분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시 이외 분야에서도 예비창업자 스스로 문제의 정의와 이에 대한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가 가능합니다.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Q. 소셜벤처에는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있나요?



- 📖 사업(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
- 📖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간접적 해결
-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나 전문역량을 제공하는 해결 지원

## Q. 소셜벤처에는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있나요?



포오션(해외)

-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팔찌 제작 및 판매
- 20달러짜리 팔찌 1개 판매 시, 바다 쓰레기 1파운드를 치우는 비용



빅이슈(해외)

- 홈리스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는 비즈니스모델로 빈곤 문제 해결
- 사회적 자금을 조성하여, 고용지원, 임대주택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수혜기업>



넷스파('20)

- 나일론으로 자원화를 위한 폐어구 공급망 구축
- 방치되었던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을 지켜내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



나이루리('21)

- 일자리가 없는 노인과 손이 부족한 배달대행사업을 매칭한 시근거리 도보배달 서비스: 할배달

## Q. 소셜벤처판별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사업에 신청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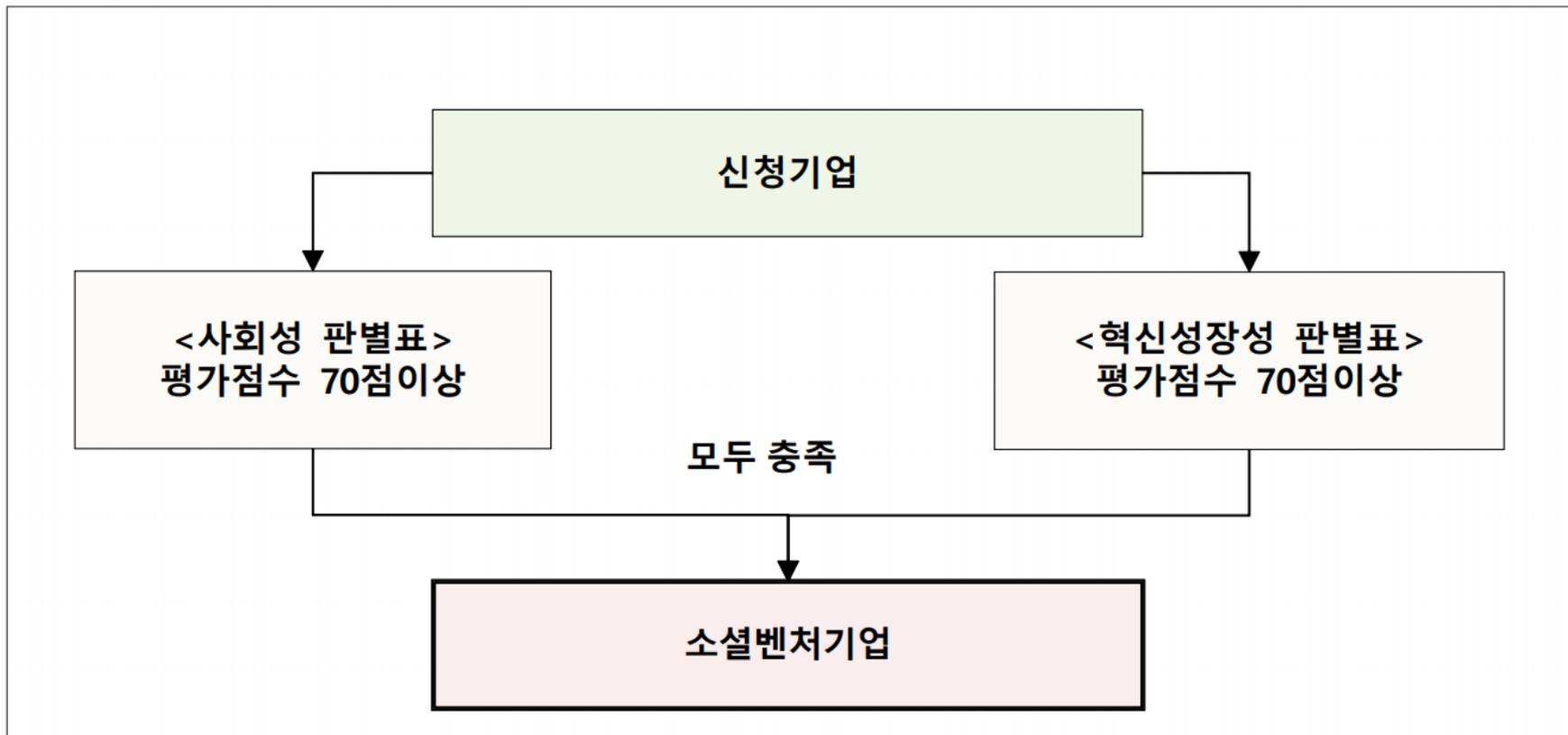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기준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공고문 [5.평가 및 선정]에 기재된 평가 지표(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입니다. 지원사업 선정 이후,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소셜벤처판별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Q. 소셜벤처판별은 무엇인가요?

소셜벤처판별은 소셜벤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입니다. 판별기준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성(12항목)**과 벤처기업으로서의 **혁신성장성(12개 항목)**을 갖춘 소셜벤처 인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 창업 후 3개월 이내 소셜벤처 판별 완료 필수 (사업공고 [2.신청자격 및 요건])
-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에서 세부 항목 확인가능

## <소셜벤처 판별 기준>



## <사회성>

출처 : 소셜벤처스퀘어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양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sup>1)</sup> 되어 있고, 추진 <sup>2)</sup> 중인 기업	50점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 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30점
	정관 외 기타증빙 <sup>3)</sup> 은 50%만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양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양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양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양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점

## <혁신성장성>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sup>4)</sup> 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sup>5)</sup>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sup>6)</sup>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 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up>7)</sup>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 개발 금액 <sup>8)</sup> 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점

# 예비창업패키지 공통 부문

**[ 신청 자격 관련 ]**

**Q. 특화 분야의 선정규모는 일반 분야와 상이한가요?**

**A.** 예비창업패키지 총 선정 규모는 1,260명 내외이며, 일반분야 760명 내외, 특화분야 500명 내외입니다.

\* 일반 특화분야 선정규모는 신청 및 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신청자도 특화 분야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22년도는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신청 분야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2.3.17.목, 16: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관련 ]**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시제품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시, 시제품 제작 완료를 목표로 사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 신청 자격 관련 ]

**Q.** 2년 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창업을 하지 않아 활동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22.2.24)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 되어 있을 경우 이종업종일 경우 지원 가능,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단,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한 자가 공고일 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
- 이종업종 확인은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 세세분류(5자리)까지 한자리도 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종업종으로 판단

**[ 신청 자격 관련 ]**

**Q.**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 등록 보유 증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동산업(임대업) 또한 사업자 등록으로 모집공고일('22.2.24.)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Q.** 모집공고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등록은 관계없으며, 지원사업 선정 이후 신청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청 자격 관련 ]

**Q.**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시 신청자(대표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하기에 직장 내 창업 관련 규정(겸직 허가 등)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협약기간이 중복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 활용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팀 구성 관련 ]

**Q.** 팀원이 다른 직장에 재직 혹은 사업자입니다. 참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집행 시, 사업 참여율 및 4대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인건비는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의 사업장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Q.**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창업 할 수 있는 비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K-Startup 온라인 신청 전, SCI(서울신용평가 정보)에 반드시 실명 정보를 등록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실명 미등록 시, 사업 신청 불가

## [ 팀 구성 관련 ]

**Q.** 사업계획서에 팀원 없이 대표자만 작성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현재 구성 완료된 팀원에 대한 계획 없이 '1인 창업'으로 작성하셨다고 해서 감점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정평가 평가 지표에 '팀구성' 항목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 [ 사업계획서 관련 ]

**Q.**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A.** 사진, 그래프, 표 등 모두 삽입 가능합니다.

**Q.** 사업계획서 안내사항에 본문 7페이지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까지 작성 가능한가요?

**A.** 분량에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목차를 제외하고 7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페이지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되도록 가급적 본문 7페이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편집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내, 파란색 글자는 작성을 위한 '안내 문구'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 전에는 삭제 후 작성한 내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사업계획서 관련 ]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글자 폰트와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A.** 글자와 폰트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서(일반현황, 창업아이템 개요)는 7페이지 내외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권장 포인트는 10~15p입니다.

**Q.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시, 선정 과정에서 탈락처리 됩니다.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주시고, 양식 변경 및 임의 삭제(표.행 추가 가능)가 불가 하오니 안내에 따라 작성해주시시오.

## [ 사업비 집행 관련 ]

**Q.** 전 직장 동료들 추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팀원으로 구성은 가능하나, 인건비 지급 불가합니다.

**Q.** 공동대표자는 월급을 줄 수 없는 건가요?

**A.** 네, 팀원은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공동대표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멘토링 등에 참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선정자는 창업교육 40시간과 전담멘토링 참여가 필수이기에 미수료 시 지침 및 기준 위반으로 제재 조치로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Q.** 협약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업체를 잠시 휴업해도 되나요?

**A.**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폐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이 조치됩니다.

■ 문의 :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팀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presocialventure



@presocialventure



02-6331-7125, 7127, 7128